

##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

### ◇ 개정이유

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어, 개인소유 및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,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◇ 시행일자 : 2006. 4. 1

### ◇ 주요내용

#### 가.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금지(법 제23조)

수상레저활동자는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, 환각물질의 영향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함.

#### 나.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 도입(법 제30조 및 제37조)

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,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시에 신규검사를, 등록 후 5년마다 정기검사를,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임시검사를 각각 받도록 함.

#### 다. 보험가입 의무(법 제34조)

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.

#### 라.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(법 제47조)

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,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를 생략하도록 함.

